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7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대폭 개선
-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 코로나 19 불확실성하 금융상품 손상규정 유의사항

세무 및 법률정보

- 2020 세법개정안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대폭 개선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대폭 개선

[출처: 금융감독원, 2020.05.21]

-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
-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확대하고,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

I. 질의회신제도
현황

회계당국은 '10 년부터 기업, 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 운영합니다.

- *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음(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7 조제 1 항)
- 금감원·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질의회신연석회의*」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
- * 공동위원장 (금감원 국장·기준원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 팀장 2 인, 민간전문가 9 명(금감원·기준원·한공회·상장협 각각 2 명, 코스닥협 1 명 추천) 포함한 총 13 명

질의 유형은 크게 ①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②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합니다.

①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는 그 내용의 난이도 및 쟁점사항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술적 지원과 ㉡해설로 나뉘며

- 기술적 지원사항은 신속처리(실무자 검토, 2~3 일 내)하고 해설사항은 질의회신연석회의(1~2 개월 소요)를 거쳐 회신

* 기술적 지원 : 573 건('16 년), 1,057 건('17 년), 1,424 건('18 년), 1,769 건('19 년)

* 해설 사항 : 18 건('16 년), 24 건('17 년), 31 건('18 년), 22 건('19 년)

②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아 회신하지 않음.

<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유형별 예시 >

구분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㉔기술적 지원으로 회신	㉕해설로 회신	
질의 예시	<p>코로나 19 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 가동이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 일시 가동 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속 회계 처리해야 하는가?</p>	<p>코로나 19 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 가동이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 일시 가동 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u>영업비용 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 인지?</u></p>	<p>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 운송계약 (선박 대체권 포함)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 회 대체 하였으며, 대체 결과 1 번은 이익, 1 번은 손실이 발생 (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p> <p>이 경우 선사는 <u>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u></p>
회신 예시	<p><u>운휴(가동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한정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속 비용으로 회계처리</u></p>	<p>동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중 <u>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영업비용)로 분류</u></p> <p>기준서는 <u>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비용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u></p>	<p>☞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사항으로 회신하고 있지 않음</p>

Ⅱ. 이슈 및 문제점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질의회신 사례를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나, 공개 사례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선진화 방안('19.6월)' 후속조치로 '19년 상반기 회신건(9건)에 대해서만 '19년 12월말 공개.
 - 현재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결론과 판단근거만을 요약하여 공개
- 기업회계 현장에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교육 지원 필요성 제기
 - 그간 일부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결론 및 판단근거만 안내하는 방식 교육 수행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현재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 판단 어려움으로 회신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
 -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질의 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

Ⅲ. 개선방안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대폭 확대 및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
 -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되,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
 -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
 -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16~'18년도 해당분(39건)은 '20.6월말, '11~'15년도 해당분(61건)은 '20.12월말까지 공개 예정
 - * 국제회계기준(IFRS)의 후속적인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질의회신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또는 중요한 쟁점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
 - * 질의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
-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개선사례(예시) 참고자료 참조

IV. 기대효과

- (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
 - * 오프라인 교육(기준원 자체 교육 2회, 상장협·코스닥협 교육 2회, '20년 하반기), 온라인 교육(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유튜브에 강의를 업로드, '20년 하반기)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자료 제공 및 사례 교육 강화
 - 기업(감사인 포함)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 묻는 질의 관련, 원칙적 회신을 통해 회계처리 관련 고려할 사항 상세히 안내
 -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V. 향후계획

-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및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 예정('20년 6월 이후, 잠정)
- 질의회신 사례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 ('20년 하반기, 잠정)
-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즉시 확대합니다.

< 참고자료 >

사례 1번 : 연결범위 판단 관련

1. 질의내용

- ▶ 투자자 A사는 피투자자 B사에 대해 의결권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력의 3가지 요소(① 힘, ②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③ 힘과 이익의 연관) 중 힘을 충족하면 연결한다고 가정
- ▶ B사의 최근 주주총회에서 A사의 실질지분율*은 52%였음. 주주총회 참석시 실질지분율 과반을 초과하므로 A사는 B사를 연결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 현재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있지 않음)
- * A사 지분/주주총회 참석 총지분

2. 질의회신 개선(예시)

- ▶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은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시 힘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지표 중 하나에 해당
- ▶ 따라서, 회사는 ① 주주총회 의결양상 이외에도 ② 지분의 분산 정도, ③ 주주들의 구성, ④ 최근까지의 참석률 변동 추이, ⑤ 다른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소(예: 전자투표제) 등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사례 2번 : 리스계약 판단 관련

1. 질의내용

- ▶ 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운송계약*(선박대체권 포함)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함.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회 대체하였으며, 대체 결과 1번은 이익, 1번은 손실이 발생 (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
* 동 계약이 리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사의 대체권이 실질적 인지 검토가 필요 → 기준서상 ① 선사가 대체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고, ② 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을 얻는다면 대체권이 실질적임
- ▶ 이 경우 선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 현재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회신 개선(예시)

- ▶ 선박대체로 인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① 선사와 화주간의 계약 조건, ② 계약기간 동안의 선박 대체 시장의 업황, ③ 선박대체 기회, ④ 운항일정 등 다양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해야 함

2019 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출처: 금융감독원, 2020.06.04]

-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 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점검*을 실시합니다.
-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20.2.26.)한 중점점검 항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 점검결과 기재미흡사항은 회사에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거나 차기 보고서에 반영 하도록 지도합니다.

I. 점검결과

- ▣ 재무 사항 : 미흡비율은 44.5%로서 전년(27.6%) 대비 상승(16.9%p)하였으며,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 관련 기재가 상대적으로 미흡
- * 해당 점검사항 제외 시 전체 미흡비율은 16.6%로 전년(27.6%)보다 전반적으로 개선
- ▣ 비재무사항 : 미흡비율은 46.3%로서, 전년(75.9%) 대비 크게 개선(29.6%p) 되었으나 특례상장기업 및 제약·바이오기업 기재 상대적으로 미흡

(재무사항) 점검대상 2,500사* 중 1,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 (미흡률: 44.5%) 되었으며, 전년보다 미흡률 16.9%p 상승

* '19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총 2,696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500사 (상장 : 2,117사, 비상장 : 383사)

- 미흡사항 비중은 ①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61.7%), ② 재고자산 현황(9.6%), ③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④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⑤ 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의 順

*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이 논의한 결과

주요 기재 미흡사항

- ①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연중 실시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
- ②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부문별 금액, 실사내용, 장기체화 재고 등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미기재
- ③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등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
- ④ 「감사보고서 본문」에 비교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여부 또는 전기감사인의 입장(동의, 미동의, 일부동의 등) 미기재
- ⑤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및 「감사보고서 본문」에 핵심감사항목(KAM)을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

(비재무사항) 점검대상 2,402사* 중 1,114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 (미흡률: 46.3%) 되었으며, 전년보다 미흡률 29.6%p 하락*

* '19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총 2,696사 중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한 2,402사(상장 : 2,046사, 비상장 : 356사)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및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기재수준은 과거 점검결과 대비 크게 개선*된 반면,
 -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18년(79.5%) → '19년(11.9%)], 최대주주의 개요 ['17년(50.1%) → '19년(17.6%)]
 - ※ '최대주주의 개요'는 '17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등) 및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반복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

주요 기재 미흡사항

- ❶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를 불특정하거나 공시 내용만으로 회계·재무 전문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
- ❷ (직접금융 자금) 조달금액·사용금액간 차이발생 사유 부실기재
- ❸ (최대주주의 개요)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재무정보, 사업현황,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부실기재
- ❹ (임원의 현황) 최근 5년간 주요 직무(재직기간 미기재), 이사의 연임여부 및 횟수 등을 미기재
- ❺ (개인별 보수 공시)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기재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를 미기재
- ❻ (특례상장기업) 재무사항 예측치·실적치 비교표를 미기재하거나, 괴리율 발생 사유에 대해 부실기재
- ❼ (제약·바이오기업) 공시 모범사례 중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중단내역 등을 부실기재

II. 향후계획

-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토록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를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
-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교육 지속합니다.
 - * 공시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일정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코로나 19
불확실성 下
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유의사항

코로나 19 불확실성 下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규정 적용 유의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2020.04.13]

-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격상(2.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선언(3.12일) 등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됩니다.
-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대표적인 예 : 대출채권, 매출채권)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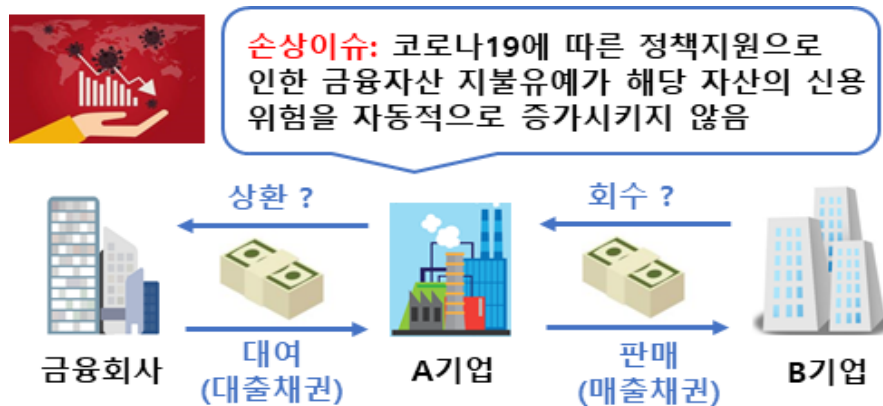
< 금융상품 손상인식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9) 규정 >

-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채무불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금융자산의 전체 존속기간동안 기대되는 신용손실*(ECL)을 손상으로 인식
- *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 현재 부실화(예: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등)된 채권뿐만 아니라,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
- 기대신용손실 금액 산정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고 조정할 지에 대해 판단(judgement)이 필요하다고 규정

-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I. 주요내용

-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①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 는 않음
 - ② (A기업은 B기업관련 매출채권 보유) → A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예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하여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
- ➔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코로나 19 관련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 조+@” >		
①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 자금 공급 → 58.3 조원	②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지원 → 31.1 조원	③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10.7 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중소·중견기업자금지원 확대 (대출, 보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 성하에서 IFRS 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시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을 최근 발표('20.3.27일)한 바 있음.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IASB)

II. 기대효과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검토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0세법개정안

2020 세법개정안 상세본

□ 기획재정부는 2020. 7. 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코로나19 피해 복구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①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1) 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

-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업종별 특성을 감안, 일부 예외 인정 :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

* 현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 배제

** 중소기업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예외 인정

(3)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부여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 / 중견 3% / 중소기업 10%)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 적용

(4)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대기업 3% / 중견 5% / 중소기업 12%)

*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 →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 예정(시행령 개정사항)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

* (현행) ①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②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 ③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 ④상시근로자 수 유지

(개정) ②~④ 요건은 폐지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년 투자분 :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1년 말인 점 감안

②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①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②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개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①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②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예)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법인세법·소득세법)
 -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 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 (현행) 미공제액 소멸 →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소득세법)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2)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A. R&D 지원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특령)
 -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①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②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①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②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
화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 원, 1인당 △117만 원)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 원, 1인당 △59만 원)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②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2) 일자리 지원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① (근로소득증대세제)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22.12.31.)
- ②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환인원 당 1,000만 원(중견 700만 원) 세액공제(~'21.12.31.)
- ③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공제(~'22.12.31.)
- ④ (경력단절여성 고용)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 추가(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 원 인상 효과)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400~1,200만원 세액 공제 (대기업 2년간, 중소기업·중견기업 3년간)

< 고용증대세제 개요 >				(단위: 만 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대상 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u>고령자</u>)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3)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등)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③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 (소득구분)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함
 - **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 : 취득가액 = Max(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법 시행 전 날 시가)
-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
- (세율) 20%*
 - *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 감안
-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①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

②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③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가 과세(세율 20%)

① 투자 포함형 : [소득의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 × 20%

② 투자 제외형 : [소득의 15% - (임금증가+상생 금액)] × 20%

①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②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당해 연도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③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합리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02, 2020.06.26)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 AAAA(이하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으로 외국본점 제품의 한국내 구매 및 판매활동에 대한 행정적, 실무적 지원 및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됨.

○ 외국본점이 국내 관계회사인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국내 관계회사 을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할 예정임.

○ 외국본점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갑법인, 을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대가를 직접 수수할 예정이며 신청법인은 외국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 실무적 지원용역을 수행할 예정인바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 갑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을법인에 판매되는 제품 재고의 물류흐름관리 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 품질관리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제조 품질 시스템 관리 및 교육지원
- 재무지원 : 외국본점의 본건 거래 관련 구매주문서, 청구서 등 거래문서 검토, 회계·재무업무 지원

○ 외국본점은 신청법인의 지원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직·간접 비용에 적정 마진을 가산하는 Cost Plus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신청법인에 지급하고(신청법인은 해당 용역대가를 회계상 매출액 계상)

- 신청법인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매출·매입 부가가치세액의 차액을 외국본점으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예정임.

(질의내용)

○ 외국법인(본점)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1.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이 해당 재화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지원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2020.06.04)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화장품 및 화장용품을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 ◇◇ 브랜드의 법률적 경제적·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법인의 해외 관계사인 ◇◇과 체결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무형자산의 사용 권리에 대하여 및 마케팅, 경영 노하우를 제공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의 사업부문은 크게 국내 백화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과 국내 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룹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신청법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권한 일체 및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 정보 등)를 ◇◇에 이전하고 국내에서 면세점 판매지원 활동만 수행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은 면세점 사업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종결 및 무형의 권리를 ◇◇에 이전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보상 계약을 체결함.

(질의요지)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양도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이하“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